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1
----------	----

2018. 11. 29.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0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1월 23일

-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우종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- 제2충북학사 건립으로 3개 학사(서울2, 청주1)의 명칭 통일 및 도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학사 시설명칭 변경 필요
-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일부 수정

나. 주요내용

- 충북학사 시설명칭 변경(안 제1조, 안 제2조)
 - (당초) 충북학사 ⇒ (변경) 충북학사 서서울관
 - (당초) 충북학사 청람재 ⇒ (변경) 충북학사 청주관
 - (가칭) 제2충북학사 ⇒ 충북학사 동서울관
-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부 수정함

- ‘운영법인’ 을 ‘법인’ 으로 수정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- ‘공유재산 및 물품’ 을 ‘공유재산 등’ 으로 수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- ‘책무’ 를 ‘의무’ 로 수정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최영지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으로 3개 학사(서울2, 청주1)의 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에서는 서울소재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라, 총 3개 학사의 명칭을 도민이 알기 쉽게 변경함.

현 행	개 정 안
○충북학사 (서울 소재)	○충북학사 서서울관 (서울 소재1) ○충북학사 동서울관 (서울 소재2)
○충북학사 청람재 (청주 소재)	○충북학사 청주관 (청주 소재)

- 다만, 부칙에서 본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2019년 1월1일로 정하고 있고, 본 개정안 공포시기가 12월 중순 정도로 판단되는데, 기존 제반 서류양식 및 내·외부 홍보물 등의 명칭 변경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, 준비기간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.
- 안 제4조에서는 ‘재단법인 충북학사’ 의 약어표기를 ‘운영법인’ 에서 ‘법인’ 으로 변경하였고, 이에 따라 안 제6, 7, 8조에서도 변경된 약어표기로 개정함. 이는 약어표기 사용 시 의미전달에 무리가 없으며, 효율성 원칙에도 부합한 것으로 타당함.
- 안 제6조에서는 조 제목 중 법인의 ‘책무’ 를 ‘의무’ 로 변경함.

-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하고, 의무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의미함.
- 제6조의 조항 내용을 보면, 법인의 시설 및 인원 확보, 공유재산 등의 사용범위 제한,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, 조례 및 규정 준수 등 법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, ‘책무’를 ‘의무’로 변경하는 것은 정확한 용어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라 3개 학사의 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일부 약어 표기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1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8년 10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제2충북학사 건립으로 3개 학사(서울2, 청주1)의 명칭 통일 및 도민 이용 편의 등을 위해 학사 시설명칭 변경 필요
- 충북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일부 수정

2. 주요내용

- 충북학사 시설명칭 변경(안 제1조, 안 제2조)
 - (당초) 충북학사 ⇒ (변경) 충북학사 서서울관
 - (당초) 충북학사 청람재 ⇒ (변경) 충북학사 청주관
 - (가칭) 제2충북학사 ⇒ 충북학사 동서울관
-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부 수정함
 - '운영법인'을 '법인'으로 수정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 - '공유재산 및 물품'을 '공유재산 등'으로 수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 - '책무'를 '의무'로 수정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북학사 및 농촌출신학생기숙사인 충북학사 청람재”를 “충청북도학사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충청북도학사(이하 “학사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에 두며,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충북학사 서서울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
2. 충북학사 동서울관: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
3. 충북학사 청주관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-7

제4조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공유재산 및 물품”을 “공유재산 및 물품(이하 “공유재산 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운영법인의 책무)”를 “(법인의 의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, “공유재산”을 공유재산 등“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“운영법인”을 각각 “법인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운영법인”을 “법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법인”을 각각 “법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<u>충북학사 및 농촌출신학생기숙사인 충북학사 청람재</u>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충청북도학사</u>----- ----- ----- -.</p>
<p>제2조(위치) <u>충북학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(당산동) 충북미래관 내에 두고 충북학사 청람재(이하 "학사"라 한다)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-7(지북동)에 둔다.</u></p>	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<u>충청북도학사(이하 "학사"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에 두며,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충북학사 서서울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</u> 2. <u>충북학사 동서울관: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</u> 3. <u>충북학사 청주관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-7</u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운영위탁) 학사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(이하 “ <u>운영법인</u> 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운영한다.	제4조(운영위탁) ----- ------(이하 “ <u>법인</u> ”이라 한다)-----.
제5조(운영지원)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<u>공유재산 및 물품</u> 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.	제5조(운영지원) ----- ----- ----- <u>공유재산 및 물품</u> (이하 “ <u>공유재산 등</u> ”이라 한다)을----- -----.
제6조(<u>운영법인의 책무</u>) ① <u>운영법인</u> 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 ② <u>운영법인</u> 은 지원받은 금전 및 <u>공유재산</u> 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 ③ <u>운영법인</u> 은 위탁운영 기간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④ <u>운영법인</u> 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 ⑤ <u>운영법인</u> 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	제6조(<u>법인의 의무</u>) ① <u>법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법인</u> 은 ----- <u>공유재산 등</u> ----- -----. ③ <u>법인</u> ----- ----- -----. ④ <u>법인</u> ----- -----. ⑤ <u>법인</u>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사업승인 등) <u>운영법인</u>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7조(사업승인 등) <u>법인</u>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감독)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<u>운영법인</u>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<u>운영법인</u>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<u>운영법인</u>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감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법인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법인</u>에게-- -----<u>법인</u>은-- ----- -----.</p>